

제 호

(앞쪽)

물적자원훈련통지서(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)

업체명		대표자 성명	
업체 주소		대표자 생년월일	
훈련내용	[] 업체사용 [] 시험제품생산	사용기관 (인수기관)	
훈련기간	년 월 일부터 (일간) 년 월 일까지	시험제품의 품명 및 수량	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행정기관의 장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
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지방행정기관의 장

직인

..... < 절 취 선 >

제 호

물적훈련통지서(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) 수령증

수령자	성명		생년월일	
	(서명 또는 인)			
	주소			
	업체의 장과의 관계			
	수령일시		수령장소	

물적자원훈련통지서(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)

1. 이 통지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필요한 물자·장비·시설 등을 점검하여 훈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2.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업체와 장소에서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3. 이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훈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1.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2.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